제323회 임시회 2013.09.11.(수)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교육위원회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3.09.11.(수) 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 : 2013년 08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08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09월 04일

(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O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관리국장 박노화)

## 가. 제안이유

교육부 권고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과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 육공무원 임용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 를 면제하고,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내용을 바르게 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과 고등 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 면제조항 신설(안 제5조제1 항제2호)
- 2)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,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4조)
- 3) 수수료 징수 면제 조항의 미비점 보완 정비(안 제5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김성곤)

- 가.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일부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, 조문 내용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나.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과 「한부모가족지 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(25천원~35천원) 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(10천원)를 면제1)하고,
- 다.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, 조항의 재배열 등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바르게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
<sup>1)</sup> 교육청 추산 연간 면제규모 25명 575천원
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 음"
- 9. 첨부서류 :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, 제1항(종전의 제2항) 중 "증명사항으로 여러 건의 사항"을 "사항으로 여러 건"으로, "각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"를 "건마다"로, "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"를 "청구할 경우에는 통마다"로, "매 인에 대하여"를 "1명마다"로 한다.

제4조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1.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·발급하는 증명
- 2.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 시 응시원서 접수 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5조에 따른 수급권 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응시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제 받고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 청할 경우
- 3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제5조제2항 본문 중 "증명을 발급받는 자로서"를 "제증명은"으로, "자에 대하여는"을 "경우에"로, "징수하지 아니한다"를 "면제할 수 있다"로 한다.
- 제5조제2항제1호 중 "교육지원 대상자"를 "교육지원 대상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"로 한다.

- 제5조제2항제2호 중 "적용을 받는 자"를 "적용을 받는 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"로 한다.
-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3.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
  - 4.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
- 5.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제5조제3항부터 제6항을 삭제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 정 혅 아 행 제4조(수수료 징수 방법) ① 수수 제4조(수수료 징수 방법) <삭 제> 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, 시험· 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, 별표 2 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따라 징수 한다. ②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① ----- 사항으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 건 ----------- 건마다. 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 다 1건으로 하며, 같은 내용의 \_\_\_\_\_ 증명을 2통 이상 <u>청구할 때에는</u> ----- 청구할 경우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, 여러 통마다, ------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-- 1명마다 -----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다. ③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5조(수수료 징수 면제) ① 국가 제5조(수수료 징수 면제) ① 다음 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에 따라 신청·발급하는 증명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 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다. 있다. <신 설> 1.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·발급하 는 증명

2.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

쟁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

<신 설>

## <신 설>

- 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<u>증명을</u> <u>발급받는 자로서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에 대하</u> 여는 수수료를 <u>징수하지 아니한</u> 다.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, 「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9항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 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, 「아동복지법」 제2조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

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시 「국민
기초생활 보장법」제5조에 따른
수급권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
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
응시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제 받
고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
첨부하여 신청할 경우
3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
규정이 있는 경우
② 제증명
<u>0</u>
경우에
면제할 수 있
다.
1
교육지원 대상자가 제증명을 발
급받는 경우
2

현 행	개 정 안
의 <u>적용을 받는 자</u>	적용을 받는 자가 제증명을
<u>&lt;신 설&gt;</u>	<u>발급받는 경우</u> 3.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 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
<신 설>	4.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 명
<신 설>	
③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	<삭 제>
<u>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</u> <a>④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</a> <a>명</a>	<삭 제>
⑤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 증명을 발급받는 경우	<삭 제>
⑥   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      규정이 있는 경우	<삭 제>

#### 관계법령

#### 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2.9.22] [법률 제11399호, 2012.3.21, 일부개정]

- **제137조(수수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### 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[시행 2012.8.2] [법률 제11248호, 2012.2.1, 일부개정]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 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- 제5조(수급권자의 범위)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 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.
  -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□ 한부모가족지원법

[시행 2013.3.23] [법률 제11690호, 2012.3.23, 타법개정]

- 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    - 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
    - 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    - 다. 교정시설·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
    - 라. 미혼자{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   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  - 1의2. "청소년 한부모"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  - 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  - 3.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  - 4.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  - 5. "아동"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  - 6. "보호기관"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  - 7. "한부모가족복지단체"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- 제5조(보호대상자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 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.

#### □ 공무원임용시험령

[시행 2013.4.23] [법률 제245040호, 2012.4.22, 일부개정]

- 제35조(응시수수료)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. 다만,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.
  - 1.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: 1만원
  - 1의2.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: 1만원
  - 2. 6.7급 공무원채용시험: 7천원
  - 3. 8.9급 및 기능직 공무원채용시험: 5천원
  -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6.29>
  - 1.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
  - 2.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 료의 전액
  - 3.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
  -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